



보도 일시	2022. 6. 24.(금) 조간	배포 일시	2022. 6. 23.(목) 10:00
담당부서 <총괄>	금융위원회 구조개선정책과	책임자	과 장 손성은 (02-2100-2910)
		담당자	사무관 성보경 (02-2100-2914)
			사무관 정종현 (02-2100-2911)
			사무관 이준협 (02-2100-2904)

## 국제기준 등에 따라 「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」이 경영상 어려움에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작성한 자체정상화계획 등을 첫 승인

### 주요 내용

- 금융위원회(또는 "금융위")는 10개의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이 제출한 자체정상화계획('22.3.30일 승인)과 예금보험공사(또는 "예보")가 수립하여 제출한 부실정리계획('22.6.22일 승인)을 승인하였습니다.
  - 자체정상화계획·부실정리계획 수립\* 등을 통해 대형금융기관의 위기대응 능력이 제고되고, 정리당국의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능력이 강화되어,
    - 금융위기상황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혼란이 최소화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.
- \* 1년 주기로 자체정상화계획·부실정리계획의 작성·수립, 평가·심의, 승인 진행

## I 자체정상화계획 및 부실정리계획 제도 도입 배경 및 경과

### 1. 제도 도입 배경

- '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위기 당시, 대형금융회사의 부실이 금융시스템 전체에 퍼지고 실물경제의 위기가 초래됨에 따라,
  - G20를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의 논의를 바탕으로 '11년 금융안정위원회(FSB)는 대형금융회사의 부실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권고하였습니다.

- 우리나라에서도 FSB의 권고안 도입을 추진하여 「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(또는 "금산법")」이 개정·시행('21.6.30일)되었습니다.

**< 금융안정위원회(FSB)의 정리제도 권고안 주요내용 및 법개정 반영 사항 >**

- ① '금융체계상 중요한 기관'별로 자체정상화·부실정리계획을 정기적으로 작성하여 시스템리스크의 발생 가능성에 사전적으로 대비 → 금산법 반영
- ② 예금자를 포함한 채권자도 손실을 분담하게 하는 제도(Bail-in) → 국내 미도입
- ③ '금융체계상 중요한 기관'의 도산·정리절차가 개시되는 경우 금융시장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거래상대방의 거래 종료 권한을 "일시정지"할 수 있게 함 → 금산법 반영

**2. 자체정상화계획·부실정리계획의 제출 및 심의 경과**

- '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'으로 선정된 10개사\*는 자체정상화계획을 작성하여 '21.10월 금융감독원(또는 "금감원")에 제출하였습니다.

\* 금융위는 금융회사의 기능 및 규모, 다른 금융기관과의 연계성, 국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력 등을 고려하여 신한·KB·하나·우리·농협지주, 신한·국민·우리·하나·농협은행 등을 선정('21.7월)

- 금융감독원은 자체정상화계획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작성\*하여 자체 정상화계획과 함께 '21.10월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였습니다.

\* 금감원은 제출받은 자체정상화계획을 지체 없이 예금보험공사에 송부함

- 예금보험공사는 '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'에 대한 부실정리계획을 수립하여 '22.4월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였습니다.

- 금융위원회는 '자체정상화계획 및 부실정리계획 심의위원회(이하 '심의위원회')'를 설치(금산법 §9조의6)하여,

\* 금융위원회 김용재 상임위원(심의위원장) 외 4인의 금융 전문가로 구성

- 자체정상화계획 등을 제출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심의를 거쳤습니다.



## II 자체정상화계획의 주요내용 및 평가(금감원), 심의·승인(금융위) 결과

### 1. 자체정상화계획\*의 주요 내용

\*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이 경영 위기상황에 대비하여 자체적으로 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하여 작성한 자구계획(금융지주회사는 중요 자회사를 중심으로 작성)

□ 각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이 작성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제출한 자체정상화계획에는,

- ① 경영 위기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이사회 및 임원 등의 권한과 책임 등 지배구조가 제시되어 있으며
- ② 경영 위기상황에 대한 판단 기준("발동지표·요건"), 자본적정성 등 재무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한 자구책("자체정상화 수단")등이 반영되어 있습니다.
- ③ 또한 위기상황에서 금융시장 및 금융소비자 등의 불필요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의사소통 전략 등도 포함되어 있습니다.

□ 자체정상화계획에 기재된 경영 위기상황이 발생한 경우 해당 금융기관에게 동 계획에 따른 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발생합니다. (금산법 제9조의9)

#### < 자체정상화계획 주요내용 (10개사 공통) >

- ① **(발동지표 및 발동요건)** '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'은 위기상황을 인식하기 위해 '자본적정성 및 유동성비율' 등을 중심으로 모니터링하고("발동지표" 선정),
  - 규제비율을 상회하는 수준(총자본비율 11.5% 이상, 통합 유동성커버리지율 85% 이상 등)으로 버퍼를 두어 '위기징후' 또는 '위기' 상황 여부를 판단 ("발동요건" 설정)
- ② **(위기상황분석)** 자체정상화계획 실행이 예상되는 심각한 다양한 위기상황을 가정\*하여, 계획이 실효성 있게 작동되는지 여부를 분석

\* [예시] 금융기관들은 주로 거액 차주 부실발생, IT 시스템 마비, 실물 경기침체 (GDP 성장률, 주가지수 변동 등 고려)에 따른 고위험 산업 대출의 연쇄 부실 등 발동지표가 '위기상황'의 발동요건(자본비율, 유동성비율)보다 악화된 위기상황 시나리오를 가정

③ **(자체정상화 수단)** 금융회사들은 위기상황 및 정상화수단별 특성을 고려하여, 유동성조달(채권발행, 예금조달 등)·자산매각(채권매각, 부동산 등 보유자산 매각)·자본확충(채권발행, 유상증자 등) 등 실효성이 높은 수단을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핵심 자체정상화 수단으로 선정

- 위기상황별 정상화수단의 개선효과 분석결과 자본적정성 및 유동성지표 등 발동지표가 위기발생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는 것으로 분석

## 2. 자체정상화계획에 대한 평가(금감원) 결과

□ 금감원은 자체정상화계획 평가 과정에서 향후 보다 실효성 있는 위기대응이 가능하도록 보완이 필요한 사항\*을 발굴하여 제시하였습니다.

- \* (예시) ①금융회사가 위기를 조기에 인식하고, 위기시 금융회사 및 감독당국이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대처할 수 있도록 발동지표와 발동요건을 설정할 것, ②위기상황에서 자체 정상화계획의 운영 및 실행에 필요한 각종 정보사항을 경영진 등의 의사결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경영정보시스템을 점검·보완할 것 등

## 3. 자체정상화계획의 심의(심의위) 및 승인(금융위) 결과('22.3.30일 승인)

□ 금융위는 10개 금융회사의 자체정상화계획이 관련 법규(포함사항, 작성기준 등)\* 등을 준수하여 작성된 것으로 심의하고, 10건의 계획을 모두 승인하였습니다.

- \* 금융지주회사 감독규정 제25조의5 및 <별표 4>, 은행업감독규정 제26조의4 및 <별표9> 등
- 한편, 금융위는 평가·심의과정에서 보완·개선이 필요하다고 제기된 사항\*들을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에 통보하였습니다.
- \* 보완필요사항들은 금융기관들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고 판단되어 모든 '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'에 동일한 사항을 제시

### III 부실정리계획의 주요내용 및 심의·승인(금융위) 결과

#### 1. 부실정리계획\*의 주요 내용

\* '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'으로 선정된 금융기관이 자체적으로 건전성을 회복하기 불가능한 경우에 대비하여, 정리당국이 해당 금융기관을 체계적으로 정리(정상화 또는 퇴출)하기 위해 자금지원, 계약이전, 청·파산 등 정리권한을 행사하는 등의 계획을 수립

□ 예금보험공사가 수립하여 제출한 부실정리계획에는,

- ① 부실 발생시 금융안정을 유지하면서 실행가능한 정리방식 및 세부 이행계획("정리전략")과 정리전략의 이행에 소요되는 자금 조달방안,
- ② 정리 과정에서 핵심기능 등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운영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방안 및 예금자보호 방안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.

#### < 부실정리계획 주요 내용 (10개사 공통) >

- ① **(부실상황 시나리오)** 각 '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'이 제출한 자체정상화계획의 부실 시나리오를 심화시켜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여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는 상황\*을 상정  
  
\* [예시] 주요 거래 상대회사의 부실, 글로벌 금융위기(GDP 성장률, 주가지수 변동 등 고려)가 동시에 발생하는 부실상황을 가정  
  
※ 부실 시나리오는 현실성 있는 부실화 경로보다는 정리가 필요한 상황을 가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
- ② **(정리 방식·전략)** '청·파산', '자금지원 후 경영정상화', '계약이전' 등 현행 법령상 가능한 정리방식 중에서,  
  - 정리에 투입되는 비용(투입금액에서 회수금액 제외)을 비교하고, 정리 시 금융제도의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최종 정리전략을 결정하되, 고려할 수 있는 다른 전략도 대체 정리전략으로 활용 가능한 것으로 분석
- ③ **(재원조달)** 최적 정리전략으로 채택된 정리방식을 차질없이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은 대체적으로 예보가 자체 조달(예보기금 활용, 채권발행 등) 가능  
  - 다만, 금융시장으로부터 자금조달의 어려움이 발생하는 등의 경우에는 정부, 한국은행 등의 차입 추진 가능
- ④ **(정리가능성(resolvability) 제고)** 정리전략 추진시 질서정연한 정리에 장애가 되는 요인을 파악하고, 이에 대한 해소방안을 마련

## 2. 부실정리계획의 심의(심의위) 및 승인(금융위) 결과('22.6.22일 승인)

- 금융위는 부실정리계획이 관련 법령 및 국제 기준 등의 수립기준에 대체적으로 부합하며, 이를 통해 금융위기 상황에서 정리당국의 신속·체계적인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심의하고 동 계획을 승인하였습니다.
- 다만, 부실정리계획의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보완·개선이 필요\*하고 차년도 부실정리계획 수립시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함께 제시하였습니다.
- \* (예시) ①전반적인 시장위기의 확산에 따라 부실상황이 다수의 금융기관에 전이될 경우 등도 고려하여, 부실정리계획의 자체 자원조달방안 등을 다양화할 필요, ②위기상황에서 신속히 정보를 확보하고 부실정리계획의 체계적 이행을 위해 자료 분석의 신뢰도를 제고할 필요

## IV 기대 효과 및 향후 일정

### 1. 자체정상화계획·부실정리계획 수립·승인의 기대 효과

- 대형금융회사의 부실에 대비하는 상시적인 체계가 작동되어 위기 발생 시 조기대응을 통해 금융불안의 전염을 최소화하고 금융시스템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.
-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은 자체정상화계획을 사전에 작성하여 위기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, 건전성 등을 제고하여 위기대응능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.
- 정리당국은 부실정리계획을 통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으로 '정리'에 소요되는 비용도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.

### 2. 향후 일정

- 자체정상화계획 및 부실정리계획은 1년을 주기로 하여 매년 작성, 심의 및 승인의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.
- 금년 7월경 금융위원회가 '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'을 새로이 선정하면, 내년 상반기까지 작성, 평가·심의 및 승인 등 절차가 진행될 예정입니다.



### < 금융 용어 설명 >

-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(SIFI, Systemically Important Financial Institution) : 금융위는 금융기관의 기능과 규모, 다른 금융기관의 연계성 및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력 등을 고려하여 매년 국내 금융시스템 측면에서 중요한 금융기관을 선정
- FSB(Financial Stability Board) : '09.4월 설립된 글로벌 금융규제 협의체로, G20의 요청에 따라 글로벌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금융규제 국제기준 및 권고안을 개발. 24개 회원국 및 EU 중앙은행, 국제기구(BCBS, IOSCO, IAIS, IMF, WB 등)가 회원기관으로 참여
- 정리제도 : 금융회사의 부실 발생 시 정리당국이 금융제도의 안정성 유지를 위해 자금지원, 계약이전 또는 청파산 등 정리권한을 행사하여 해당 금융회사를 정상화 또는 퇴출시키는 제도
  - (현행법상 정리방식) 자금지원을 통한 경영정상화(금산법 제12조, 예보법 제2조7호), 합병, 영업양도·양수, 제3자 계약인수(예보법 제36조), 계약이전(예보법 제36조의2), 청·파산(예보법 제36조의2), 가교 계약이전(예보법 제36조의3)

※ 개별 금융회사의 자체정상화계획 및 부실정리계획은 경영상의 비밀 등이 포함되어 있어 대외 공개할 수 없습니다.

금융위원회 <총괄>	구조개선정책관 구조개선정책과	책임자	과 장	손성은 (02-2100-2910)
		담당자	사무관	성보경 (02-2100-2914)
			사무관	정종현 (02-2100-2911)
금융감독원 <공동>	은행감독국	책임자	부국장	김형원 (02-3145-8022)
담당자		선 임	소준수 (02-3145-8025)	
예금보험공사 <공동>	대형금융회사관리부	책임자	부 장	권남진 (02-758-0541)
		담당자	팀 장	장태욱 (02-758-0542)

**1. 개요**

- ‘자체정상화계획’은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의 부실 발생 이전에 경영 위기상황 등에 대비하여 자체적으로 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한 계획
- ‘부실정리계획’은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이 자체적으로 건전성을 회복하기 불가능한 경우에 대비하여, 정리당국이 동 금융기관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정리하기 위한 계획

< 자체정상화·부실정리계획에 포함되는 주요내용 >

구분	자체정상화계획	부실정리계획
발동 요건	경영 위기상황 (금융기관 자체 설정)	자체정상화가 불가능한 상황 (정리당국 설정)
주요 내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금융기관 분석</li> <li>▶ 위기상황 시나리오</li> <li>▶ 자체정상화 수단 및 개선효과</li> <li>▶ 의사소통 및 경영정보시스템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금융기관 분석</li> <li>▶ 부실상황 시나리오</li> <li>▶ 정리전략</li> <li>▶ 재정 및 운영의 연속성 유지방안</li> <li>▶ 정리가능성 제고방안</li> </ul>

※ 금융기관의 경영상 비밀에 관한 정보 등이 포함되어 있어 상세내용은 비공개

**2. 주요 내용**

- ①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의 선정 (「금산법」 제9조의2, 영 제5조의4)
  - 금융위는 매년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 중에서 금융기관의 기능과 규모, 다른 금융기관과의 연계성 및 영향력을 고려하여 ‘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’ 선정
- ②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의 자체정상화계획 작성 및 금감원의 평가 (「금산법」 제9조의3~4, 영 제5조의5)
  - (자체정상화계획의 제출) ‘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’은 자체정상화계획을 작성하고 이사회 의결을 거쳐 금감원에 제출

- (자체정상화계획의 평가) 금감원은 자체정상화계획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작성한 후 금융위에 자체정상화계획 및 평가보고서를 제출

### ③ 예보의 부실정리계획 수립 (「금산법」 제9조의5)

- (부실정리계획의 수립) 예보는 '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'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기 위한 '부실정리계획'을 수립하여 금융위에 제출

### ④ 금융위의 자체정상화계획과 부실정리계획 심의 및 승인

(「금산법」 제9조의6~7, 영 제5조의6)

- (자체정상화계획·부실정리계획의 심의) 금융위에 자체정상화계획 및 부실정리계획 심의위원회(이하, "심의위원회")를 설치하여, 금융위가 각각의 계획을 제출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심의위원회가 심의
- (자체정상화계획·부실정리계획의 승인) 금융위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체정상화계획·부실정리계획 승인여부를 결정\*

※ 자체정상화·부실정리계획이 미흡할 경우 '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' 또는 예보에게 기간을 정하여 보완·재제출을 요구

### ⑤ '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'에 대한 조치 요구 등 (「금산법」 제9조의8~9)

- (정리시 예상되는 장애요인의 해소 요구) 금융위는 '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'에 대해 질서정연한 정리절차를 실행하는데 예상되는 장애요인이 있는지를 평가하고, 필요시 이의 해소를 요구
- (자체정상화계획에 따른 조치 요구) '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'은 금융위가 승인한 자체정상화계획에 기재된 경영 위기상황이 발생한 경우 해당 계획에 따른 조치를 이행해야 하며
  - 금융위는 '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'이 자체정상화계획에 따라 취한 조치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해당 조치의 이행을 요구할 수 있음

※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[별표4]의 주요 내용

**1 자체정상화계획에 관한 이사회 및 임원 등의 권한과 책임**

- 자체정상화계획의 작성·관리·실행 등과 관련한 이사회 및 임원 등의 책임과 역할을 계획에 포함하고, 의사결정체계 등 지배구조를 구축

**2 핵심기능 및 핵심사업**

-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지주회사는 경영 위기상황의 발생 시 핵심기능 및 핵심사업을 우선적으로 유지·추진하기 위한 계획을 마련

**3 예상되는 경영 위기상황 및 경영 위기상황에 대한 판단기준**

- 자체정상화계획 상의 경영 위기상황 시나리오는 금융기관의 고유 위기, 시장전반의 위기 및 양자가 상호 결합된 위기상황을 반영
- ‘발동지표’는 자체정상화수단의 발동시기를 식별하기 위한 지표로, 자본 적정성·유동성 등의 정량적·정성적 지표를 설정

**4 경영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구체적인 수단 및 조치내용**

- 자체정상화계획은 위기상황 발생 시 활용가능한 자체정상화수단\*의 목록을 제시하고, 수단의 집행에 따른 경영 건전성 개선 효과, 집행 절차 및 소요기간과 예상 장애요인, 집행책임자 등을 상세히 제시

\* 예시) 증자 등 자본확충 조치, 자회사 매각, 출자전환·채무조정 등

**5 경영 위기상황에 대비한 영업지속 계획**

- 경영 위기상황에서의 인력·조직구조·지배구조의 개편방안 및 금융시장 인프라 접근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요건 등을 파악

**6 감독당국에 대한 보고 등 의사소통 체계**

- 감독당국·언론·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의사소통 전략을 수립

**7 경영정보시스템 등 구축 등**

- 자체정상화계획의 운영에 활용할 수 있도록 경영정보시스템을 구축

※ 부실정리계획의 수립에 관한 국제기준(FSB의 「효과적인 금융기관 정리를 위한 핵심 요소」, 「Key Attributes 은행 부문 평가방법서」 등)의 주요내용을 참고하여 요약

### ① 전략적 사업분석

- 금융회사의 조직, 재무 건전성, 금융회사 내·외부의 상호의존도 및 핵심기능, 핵심공유서비스 및 핵심사업\*을 선정하여 부실 발생 시 유지해야할 기능, 서비스 및 사업을 파악

### ② 정리전략

- (부실상황 시나리오) 금융기관이 제출한 시나리오가 심화되어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상황을 설정하여 정리전략 수립 및 정리비용 추정 등에 활용
- (정리전략 수립) 부실상황에서 금융기관의 핵심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정리전략과 세부 이행계획 및 정리전략별 정리비용 검증 등을 작성
- (구조조정계획 수립) 금융기관의 자생력 회복을 위한 계획을 수립

### ③ 재정 및 운영의 연속성

- (정리재원 조달방안) 정리전략 이행에 소요되는 재원 마련을 위한 내·외부 자금조달 방안 및 정리에 투입된 예보기금의 회수를 위한 방안 포함
- (운영상 연속성 유지) 정리과정에서도 핵심기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관련 서비스 및 금융시장인프라(FMI) 등의 유지 방안 등을 검토

### ④ 정보 및 커뮤니케이션 관리체계

- 금융회사 및 정리당국의 의사결정조직 및 역할을 정비하고, 정리 과정에서 원활한 정보제공을 통해 금융시장의 불안을 차단하기 위한 방안 마련
- 예수금·예금자 현황을 파악하여 정리 시 지급할 예금보험금 규모를 추정하고 예금자, 언론 대응방안을 검토

### ⑤ 정리가능성 평가

- ①정리전략의 이행가능성, ②정리전략의 이행이 금융시스템·실물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하지 않는지 등을 검토하여 정리가능성 제고 방안을 도출